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희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24

발의연월일: 2025. 3. 4.

발 의 자: 박희승 · 민병덕 · 김정호

윤준병 · 김준혁 · 서영교

정준호 • 박상혁 • 안호영

강유정 • 전진숙 • 김한규

정진욱 · 소병훈 · 황명선

최기상 · 김문수 · 이개호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'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' 및 '남아도 12세부터 HPV 백신 국가 무료접종 실시'를 각각 제시했지 만,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등 공약 이행이 사실상 무산되었음.

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, 급성기에는 뇌수막염, 척수염, 망막염 등의 합병증 발생이 가능할 뿐 아니라,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는 연구 보고도 있어 예방이 중요함.

또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우 이미 법률상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지만, 질병관리청은 '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'고시를통해 해당 연도에 만 12세에 달하거나 만 12세~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러나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병변, 질과 외음부암, 항문암 및 입인두, 혀,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, 그 외에도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질환을 일으키며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급증하고 있음.

더욱이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에 달하는 반면 한국과 같이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함.

아울러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의 경우 질병 부담, 비용 효과 측면에서 이미 도입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음.

이에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,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 대상을 남성으로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1항제18호 및 제24조의2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대상포진

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만 26세 이하 여성 및 만17세 이하 남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기・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64조제2호 중 "제1항 및"을 "제1항, 제24조의2제1항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2항 및"을 "제2항, 제24조의2제2항 및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특별자 제24조(필수예방접종) ① ---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 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(이 하 "필수예방접종"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 1. ~ 17. (생략) 1. ~ 17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8. 대상포진 18. (생략) 19. (현행 제18호와 같음) ② • ③ (생 ②·③ (현행과 같음) 략) 제24조의2(사람유두종바이러스 <신 설> 감염증 예방접종) ① 특별자치 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・군수・구청장은 제24조제1 항제16호의 사람유두종바이러 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만 2 6세 이하 여성 및 만 17세 이 하 남성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 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 제64조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와 시·군·구가 부담할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 시·특별자치도와 시·군·구 가 부담한다.

- 1. (생략)
- 2. 제24조<u>제1항 및</u> 제25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
- 3. 제24조<u>제2항 및</u> 제25조제2항
 에 따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
 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
 또는 일부

4. ~ 11. (생략)

항을 준용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의
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제64조(특별자치도・시・군・구
가 부담할 경비)
<u>.</u>
1. (현행과 같음)
2제1항, 제24조의2제1형
및

3제2항, 제24조의2제2형
및

4. ~ 11. (현행과 같음)